

제34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8월11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현안보고
 - 가. 환경부 소관
 - OIT 포함된 항균필터 관련
 - 폭스바겐 사태 관련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갑을오토텍 관련
 - 채용비리 현황 및 근절 대책 관련

상정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 현안보고 2
 - 가. 환경부 소관
 - OIT 포함된 항균필터 관련
 - 폭스바겐 사태 관련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갑을오토텍 관련
 - 채용비리 현황 및 근절 대책 관련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과 제조업 부진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올해 예산은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 청년 고용 확대와 실업자 구제 등을 명목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추경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타 사업으로의 전용 등으로 실제 추경 편성의 목

적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내용들이 추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인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현안보고

가. 환경부 소관

- OIT 포함된 항균필터 관련
- 폭스바겐 사태 관련

나. 고용노동부 소관

- 갑을오토텍 관련
- 채용비리 현황 및 근절 대책 관련

(14시08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OIT 포함된 항균필터 및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간사님.

장관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河泰慶 위원 장관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우리 환노위의 건설적이고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노동 분야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간사로서 역할도 처음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우리 환노위가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성숙해 가는 데 좋은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환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에 제가 선두에서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환노위 내에서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의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오늘 환노위 진행이 더욱 원만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한정에 간사님.

○한정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모든 일을 함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역할이 미진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저 스스로 자성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함께 잘 모시고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이렇게 두 분 간사님이 저희 상임위 운영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저희 상임위가 환경·노동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더욱더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성과를 도출하는 상임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상임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서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문제,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과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의 안전관리 상황, 폭스바겐 차량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조치상황 등 환경현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업 분야를 지원하고 저성장과 고실업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면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사업 중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 받아 본예산 대비 727억 원 증액한 5조 345억 원으로 하며 세출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44억 원을 포함하여 1371억 원 증액한 5조 834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증액분으로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찰선 등 환경관리용 선박 4척 건조비 57억 원을 편성하여 위기에 처한 조선업 분야에 숨을 터주는 한편 해상국립공원이나 상수원 수질 등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실집행률 50% 이상인 계속사업과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수관거 32개소와 농어촌마을하수도 18개소에 565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들 사업은 추경 편성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환경개선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사업 등에 74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그 편성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어서 환경현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OIT로 항균처리된 필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최악 사용 상황

조건에서 약식으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써 제조사로 하여금 해당 필터제품을 수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기준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사의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일 위조서류로 인증받은 32개 차종 8만 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국과 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은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유제철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현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쪽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16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27억 원 증액된 5조 345억 원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방향은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환경관리

선박 건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투자하여 환경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예산 대비해서 1371억 원 증액한 5조 83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업비 13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환특 727억 원, 예특 6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부문별로는 본예산 대비 상하수도·수질분야가 1.7%, 대기분야가 17.8%, 자연보전분야가 0.9%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추경예산(안) 세부현황입니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수질부문은 3개 사업에 571억 원, 대기부문은 3개 사업에 749억 원, 자연보전부문은 2개 사업에 52억 원 등 총 13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세부현황입니다.

상하수도·수질부문 중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8년까지 완공예정 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16년 착공이 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해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 상수원의 노후된 조사선 교체비용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부문은 상반기에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대책 추진에 95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 1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자연부문입니다.

해상국립공원의 환경관리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한 순찰선 건조에 44억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사용 선박 건조에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상황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상황입니다.

16년 6월 차량용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어서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해당 필터

제품의 회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OIT의 정상입니다.

OIT란 곰팡이나 균을 억제하기 위한 살생물질로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와 유사 계열의 물질입니다. 용도는 14년도 기준 국내에서 약 103t 가량 유통되어 방부제, 향균제, 산업용 금속가공액, 가정용 페인트 보존제로 주로 쓰였으며 물성은 약한 휘발성으로 흡습·흡착성이 크고 공기 중 잔류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유해성은 급성경피독성이 높아 14년 5월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속 흡입 시에는 호흡곤란과 코 안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해성은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노출량과 노출경로, 수용체 특성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2쪽,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예로 들게 되면 그 물질 자체의 유해성은 낮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체중은 얼마나 되는지,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카페인을 많이 타는지 안 타는지에 따라서 그 위해성은 크고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1급 발암물질로 유해성은 매우 높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소비량과 연령, 담배의 종류 등에 따라서 위해성이 적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량을 조사한 후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추정하는 위해도 선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상세한 위해성 평가는 다양한 노출상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단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최악의 조건을 가정한 약식평가를 하고 위해도가 나타나면 상세평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약식 위해성 평가는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상세 위해성 평가는 3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6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노출평가의 경우에도 약식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방출된 물질이 100% 공기 중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하지만 상세 위해성 평가의 경우에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방출실험을 하고 노출경로별 인체영향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위해성 평가기준이 되는 노출한계는 동물실험

에 따른 무영향관찰농도를 실제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실제 노출량이 무영향관찰농도의 100분의 1, MOE 기준으로는 100 이상이면 위해하다고 평가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MOE 기준으로 1000이면 위해하다고 적용하게 됩니다.

3쪽, OIT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6월 언론보도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동 보도에 대해서 필터 제조업체 3M은 항균필터가 코팅 처리되어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항균필터가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약식으로 위해성 평가 등의 조치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모를 보시게 되면 이때 국민위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세 위해성 평가 대신 가능한 최악의 조건을 상정한 약식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가능한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는 대형 챔버에 공기청정기 2대를 최대풍량으로 5일간 24시간 연속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 비율로 환기하였으며,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자동차 내에 차량용 필터 장착 후 최대풍량으로 8시간 연속 가동하고 외부공기 유입은 차단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출량실험 결과 가능한 최악의 조건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26~76%까지 OIT 함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항균필터를 교체한 초기에 필터 내 OIT가 급속히 방출되어 권장기간 동안 항균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밑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악의 조건에서 공기청정기는 사용 후 5일, 차량용 에어컨은 사용 후 8시간이 지난 이후 필터 내 OIT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노출한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보시게 되면 2개 제품은 공기청정기용 항균필터 쿠쿠 제품이고요, 차량용 항균필터 현대모비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은 극히 예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어서 통상의 사용조건에서는 노출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최악의 조건하에서 약식 위해성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위해가 우려되어 상세평가 이전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필터명을 공개하고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특이체질의 민감계층, 택시기사와 같은 특수사용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OIT가 많이 방출되는 필터 교체 초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경과를 보시게 되면 7월 20일 OIT 필터명을 공개하였고, 업체에 대한 자진수거를 권고하였으며, 7월 22일 가전회사는 에어컨 등 제품 출시 과정에서 필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필터 모델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가 필터 모델명을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OIT 필터가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기기명을 공개하였습니다. 7월 26일 최악의 조건하에서 일부 위해가 우려된다는 7월 20일 브리핑 이후 국민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고조됨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는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7월 29일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필터 수거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쪽, 향후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제조사의 제품교환 등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8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업체는 오늘까지 수거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7년 말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질 및 함유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16년 말까지, 살생물질에 노출 우려가 있는 법정 미관리제품과 공산품 등은 17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며 수거권고 등 선조치하고 제품관리 소관부처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말까지 살생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제출한 독성자료 등의 평가를 토대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는 출시 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 폭스바겐 배출가스장치 조작 및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형사고발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가 확인되어 환경부는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는 15년 11월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를 조사하여 15개 차종 12만 6000대의 배출가스장치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폭스바겐 수사 중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였으며 환경부는 16년 8월 2일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동 건과 관련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 이행 지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에 따라 경유차 리콜계획을 최종 반려하였으며 현재 폭스바겐 측에서 일부 차종은 부품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나 임의설정 인정 등을 하고 있지 않아서 리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배출가스장치 조작차량 교체명령 또는 환불명령 관련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폭스바겐의 리콜 지연에 따라 환경부가 차량 교체명령 또는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차량 교체명령은 차량 교체 이외의 방법으로는 결함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법적 조치로 아직 그런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쪽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체계가 미비하

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의 실상은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 아우디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 아우디A7으로 위조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제작국도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증기관인 환경부는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술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서의 진본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10억 원으로 적용한 사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폭스바겐 측에서 시행 이전인 7월 25일부터 일체 시판을 자진 중단함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7월 28일 이후 신차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 과징금 100억 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일치된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종당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적용하고 부과율은 매출액의 3.0%를 적용해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해서는 폭스바겐 측에 시한을 정하여 임의설정 인정과 미국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계속 미이행할 경우 별도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리콜이행 선결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리콜계획서를 철저히 확인·검증 후 승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해서는 다른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자동차 국제회의에서 EU, 미국 등 선진국과 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증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보장하는 등 인증심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폭스바겐 측에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 법무공단 외에 민간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재인증 신청 시에는 엄격한 서류검증과 확인검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심사한 후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갑을오토텍 및 노조의 채용비리 관련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블랙시트 등의 문제까지 겹쳐 고용여건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울산·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에까지 어려움을 미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1070억 규모의 고용부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적으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6개 조선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은 국비로 지원하여 조선업 실직자와 그 가족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물량팀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도 전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난을 감안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K-Move 스쿨 사업을 확대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 재학생도 조기에 직

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3421억 원을 증액하여 조선업종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고용부의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는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사 관행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공정하게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주요 현안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미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률을 살펴보았더니 울산은 약 30% 증가하였고 거제는 8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부도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청년 취업 지원 확대와 조선업 실직자의 고용 안정 등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16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07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 17조 2920억 원을 보태 총예산은 17조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136억 원에 358억 원이 증액되어서 3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지원 인원 30만 명에 4만 명을 더하여 34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만 5000명, 청년 실업자 2만 명, 조선업 실직자 등 중장년 5000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당초 목표 30만 명에 추경 6만 명을 더해서 36만 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추진을 했었으나 실제 집행은 29만 5000명만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에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금년은 집행을 제고 노력으로 상반기만 목표 30만 명 중 18만 7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62.3%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 선정된 위탁기관 등을 활용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하면 목표하는 34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10억에 26억을 보태 4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상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별표 보시면 알겠지만 25

개 과정에 500명을 승인했는데 경쟁률이 4.3 대 1에 이르는 등 초과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하고, 조선업 실직자 중 일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조선업 실직자 대상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당초 500명에서 400명을 추가해서 900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기간 단축 등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와 민간 리쿠르트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38억에 317억을 증액하여 755억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물량팀 등 조선업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등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3만 명에 2만 명을 추가하여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업 실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에 1000명, 조선업 밀집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등 특화훈련과정에 1200명, 대학 졸업예정자도 올해부터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 확대분 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으로는 직업훈련 수요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등 6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공공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6개 지역의 구조조정 실직자나 가족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지자체에서 30%

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스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과 별도로 예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선업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서 3421억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유급휴가 훈련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한도를 4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6000명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 훈련의 훈련단가를 인상하고 인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업희망센터 등을 통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개 지역에 조선업희망센터를 만들었고, 조선업종 전직훈련과 장년인턴 우선 선발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체당금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지원 인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변경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오토택 노사 상황입니다.

그간 경위 및 최근 상황입니다. 2015년 6월 8일 제1노조는 15년 임금교섭이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을 하였고, 사측은 관리직을 필요시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 노조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위반을 주장하며 관리직의 생산현장 투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를 조치하고 퇴거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정문 및 생산동에서 농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1일 사측은 약 120여 명의 경비용역을 배치하고 노조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15년 12월 31일 사측은 정문 경비직 4명을 생산직으로 발령하고 외부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노조는 이는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비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제1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노사 입장입니다.

대체근로 관련해서 관리직을 신규채용하여 생산에 투입한 것을 위법한 대체근로인지를 놓고 조사가 지금 이견이 있으며, 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노조에서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동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으며 이 역시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경비 배치와 경비업무 외주화 관련해서는 단협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있습니다.

노사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2노조원 52명을 채용 취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이행과정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서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채용 비리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 협력업체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 노조와 임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GM,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채용 비리는 형법상 배임죄,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제3자 제보나 근로감독을 통해서 채용 비리가 발견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경찰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가칭 채용 비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세습 및 강요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특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00인 이상 2769개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법 규정이 있는 단협이 42%였고 이 중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단협이 694개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치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 시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 부분입니다.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전 과정을 거치고도 채용 여부를 고지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28개 대기업 계열사 중 13개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에서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준비생 95%가 불합격통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미통보 경험자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합격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합격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동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각각 450억 5100만 원 및 114억 52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경 집행 가능기간이 2개월 내외에 불과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사업은 조선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순찰선 2척을 건조하기 위한 4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순찰선 건조 예산 38억 8900만 원은 순찰선 준공시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을 연내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 대책사업의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추경 15억 원은 현재 보급된 수소차가 81대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아 시급성이 미흡하고 내년 8월에 충전소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의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추경 434억 2000만 원의 경우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행렬이 저조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집행행렬을 고려하여 추경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73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청년과 중장년 등 4만여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161억 원과 위탁사업비 197억 원 등 35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당 예산이 6월 말 기준으로 42.7%만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9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243억 원과 126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정부 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 가능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와 자영업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훈련 수요 증가 등 모두 2만여 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17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의 폐업한 자영업자 중 20%가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 동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8.2%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참여 가능 인원을 고려한 예산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K-Move 스쿨 단기과정 400명을 증원하고 해외통합정보망 고도화를 위해 본예산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K-Move 스쿨 단기과정의 경우 금년도 집행 실적 미진하고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경으로 반영된 단기과정예산 23억 2000만 원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사님들, 7분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하실 거지요?

○河泰慶 위원 하고 또 한 바퀴 더 돌지요.

○위원장 홍영표 그럴까요? 그래요. 5분으로 하시고요,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형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서형수 위원 이번 11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니까, 추경예산을 11조 하는 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결국 주관 부서가 고용노동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11조 중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늘리자고 하는 추경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쪽의 추경은 약 1070억입니다.

○서형수 위원 1070억 같으면 11조의 몇 %입니까? 1%가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옆에 앉아 계시는 환경부에선 1370억을 하기로, 오히려 지금 고용부보다도 300억이 요구 금액이 많습니.

그런데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주관 부서에서 1070억 원만,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비용만,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의 기금이 3400억이 포함되어서 약 44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저희 고용노동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가 하는 사업도 다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장관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70억도 보면 어차피 지금 청년일자리가 됐든 조선업 실업자가 됐든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한 발상 전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씩 더 없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핵심 사업으로 돼 있는 취성패든 아니면 K-Move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사업 자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 자체 증액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한 좀 획기적인 발상 전환,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새로운 뭔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고민들을 왜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일자리사업의 고용보험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또 청년들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사실 유럽이나 이런 사업들을 오래 한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성과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체계 자체는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때문에 예산 증액을 얼마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에 수소차 충전소 1개소 15억 원을 증액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수소차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한 80여 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잠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률’ 해서 이렇게 지금 자

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 지자체 확인해서 실집행률을 보니까요, 지금 원래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혀 다른 자료가 나오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작년 말까지 해서 42대에 운행 안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실제 집행한 국비가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 단위가 쓰는 지금 자동차 자체가 원래 여기서 파악하시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운행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뭐 일부 다른 제약 사항이 있어서 운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42대가 운행하는 수소차를 위해서 충전소 자체를, 금년에 지금 원래 3개 목표가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형수 위원 그런데 1개를 굳이 더 할 필요가, 지금 현재 추정까지 동원하면서 굳이 42대를 위해서 충전소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이, 이게 추정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보시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이 하반기에 수소택시 종류를 또 한 20여 대, 내년에는 또 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소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형수 위원 그게 지금 완공 예정 시점이 언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하나는 아마 내년 초에 될 겁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현재 원래 본예산에 충전소 3개 중에 한 군데 울산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 곳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하나를 더 굳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울산이라는 데가 작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있어야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손님 모시고 다니다가 떨어질 때쯤……

○서형수 위원 지금 울산에 다니고 있는 수소차가 몇 대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울산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수소택시를 한 20여 대 보급할 목표를 갖고

있고……

○서형수 위원 그 20여 대를 위해서 지금 충전소 하나 가지고 안 되고 2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는 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먼저 깔아 놓으면 그다음에 자동차가 보급되는 데 탄력이 붙지만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 놔도 주유소나 충전소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는 먼저 좀 깔아야 됩니다.

○서형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유해물질인 OIT 검출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위해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하지만 또 이 결과를 방패 삼아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키전자 같은 경우는 렌탈 해지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되레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정확히는 지금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정확히 모르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8월 8일에 대상 업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셨다고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담당 국장이 잘 아실 텐데 한번……

○신보라 위원 예, 발표해 주십시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게 기사에도 언급이 됐고 언론 보도상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명확히 대상 업체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히 지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왜냐면 이게 항균필터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면 렌탈 해지 요청에 응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좀 보시고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좀 협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폭스바겐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한국에서만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또 거셉니다. 어떻게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이러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환경부가 좀 강경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본국에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실험한 성적표를 수입국에서 신뢰하고 유통된 일부를 샘플로 채집해서 검사하는 방법, 이게 맞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개 서류로 제출하면 그걸 인정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샘플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수시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런, 아까 현안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위조 확인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하지만 또 성실하고 적극적인 검증 인력의 부족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업체들이 자율적인 실험을 통해서 작성한 성적서를 제출을 하게 되

면 이걸 환경부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증
을 하는데, 아마 이것 중에 3%만 직접 검증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수입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성
적서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딱 1명밖에 없
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우선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1명이 어떤 분야를 담당하
는……

○**신보라 위원** 인증 부분인 거지요.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인증.

○**환경부장관 윤성규** 교통환경연구소는 기본적
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무직·행정직 외에는 다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직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
수입업체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십
니까? 며칠,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1명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 작업이 굉장히 소홀할 수밖
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관
계가 아니라면 명확히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문에 난 것은 그렇게 낮
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환경연구소에 전문직들
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내산자동차 또 외산자동차 이렇게 구분
돼 있으면 국내산을 하겠지요. 그런데 국내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는 시기에는 또 외산이 밀
리고, 그러면 인력을 풀로 활용해서 그 밀린 일
을 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1명이라는 보도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보고서, 현안보고서에도 그 인증
체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 보강 등을 하겠
다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어떤 내용
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아까 3%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연간 우리가 한 50~100차종을
추출해 가지고, 운행 중인 차 중에서 50~100차
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한 10~15%까지
끌어올리려면 전체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
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늘려야 되고.

또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12쪽에 위조한 사례
가 나오는데 이런 위조사례를 기술적이, 전문직
이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문서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문서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인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타 회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봐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런 문서 전문 감정 인력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보라 위원** 언론보도도 된 사안에는 어쨌든
인증 담당하는 연구원이 1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필터 OIT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
는 화학물질 자체는 환경부가 소관을 책임져야
될 거지만 제품은 지금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입
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그게 명확하게 화평
법상 생활화학제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안 되어 있고 저
희는 품공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상으로 인식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전
기용품안전 관리법 이런 데 대상으로 봤는데 전
기용품안전 관리법은 그냥 전기적인 안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총리실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모여 가지고 우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기로 해서 지금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어컨 필터
의 실내공기 문제니까 이 문제, 에어컨에 대해서
도 환경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앞으로 역할을
좀 더 관련 부처 간에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
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가슴기세척제 그다음에 에어컨세척제 나오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얘기가 다음번 타자가 정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특히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정수기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니켈은…… 정수는, 저희가 정수를 담당하는데, 말하자면 수돗물을 가지고 정수하고 나온 정수가 기준 이내냐를 보는데 이 얼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수된 걸 가지고 얼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얼린 제품이, 그것도 정수냐 이게 또 맹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좌우간에 어느 부처, 이게 공산품 다루는 곳이나, 아니면 이게 먹는물로 보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정수기, 냉장고에서 얼음 나오는 것 그것이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 물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얼음 자체가 먹는물관리법 적용받는다기보다는 얼음을 만들기 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정수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수기의 정수는 저희의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수가, 이미 규정대로 정수가 된 걸 가지고 얼음을 만들거나 냉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니켈이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까지가 정수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이 좀……

○이상돈 위원 좌우간에 현재 해석은 그렇지만 앞으로 볼 때는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상돈 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기 안전성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필터 성능이랄까 정수기

의 무세균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같은 것이 과연 환경부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업체의 협동조합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심지어 상세한 기준들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의 회원 소속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거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실체는 이렇습니다. 정수기협회에서 정수기 관리를 하지만 거기서 사무국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정수기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에는 우리 환경부 관련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정수기협회의 직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별도의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검증한 결과를 정수기협회에 넘겨주면 정수기협회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일만 하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그렇게 과연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하느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세월호 같아요. 선박협회가 안전성 검사하고 확인해서 사고 나는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6월 30일자로 고시에서, 정수 기준에서 일반세균 기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수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세균에 대해서 환경부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전문가 그룹에서 일반세균이 건강 위해하고 직접 관련이, 접근은 없다, 그걸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그걸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돈 위원 그러면 먹는샘물도 일반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는샘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먹는샘물도, 예를 들면 수돗물도 총 대장균군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내로 되면……

○이상돈 위원 물론 있는데 일반세균 같은 거를 아예 없애 버렸잖아요, 정수기 거쳐 나온 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대장균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 수돗물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험하던 방식을 바꿨는데 일반세균을 포함한 시험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게 전문가 그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정수기 업체가 일반세균의 증식을, 정수기 내에서의 증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피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환경부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자문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OIT는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쓰인 CMIT와 MIT와 같은 계열로 살생물질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12년 OIT를 농약성분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농약법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농약법은 농약 살충제·살균제·살초제 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송옥주 위원** 하여튼 지정을 한 거지요? 환경부도 급성경구독성과 급성경피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 유전적 결함 의심,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2014년 5월에 OIT를 유독물로 고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그런데 이런 유독물질이 방출되는 필터가 출시되고 유통되고 있고 또 제품에 장착된 채 팔려 나가고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들이 상당히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독물로 고시된 2014년 5월 이후에는 이 물질이 함유되었고 사람이 흡입 가능한 필터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독물질로 지정된 것을

격리시키면 우리 사회가 안 돌아 갈 겁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황산이라든가 염산……

○**송옥주 위원** 가습기살균제 얘기를 알고 있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환경부에서 오락가락한 정책과 입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혼란한 거 같습니다. 필터·기기 목록 중에 일부를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기업들이 방송에 보도된 이후에 무상교체를 실시하면서도 환경부에서 위해성이 거의 없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균필터 사안에서 보듯이 환경부는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눈치나 지적을 좀 받고 나서야 행동에 나서는 전형적인 느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이후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느장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케모포비아 현상, 들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송옥주 위원** 화학공포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주부들이 직접 화학물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발적인 개선조치를 명령하기보다는 리콜 처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리콜 명령 이후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느장·눈치 대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저희 환경부 거 같으면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잘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나마 저희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지금 한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사각지대 부분은 나중에라도 컨트를 타워를 만들어서 뭔가 전국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나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

그리고 제품 사고 조사나 정보 시스템 운영 또 교육·홍보 등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권한이나 인력, 장비, 제도 등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권한이나 인력, 장비 이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살상물체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은 대개 리스트 업 된 제품 관리 중심이고 또 물질 자체는 유통량이 일정량 이상 되는 것만 관리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트 업이 안된 제품은 다 제외가 되고요, 또 양이 그 미만이면 제외가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가슴기살균제 사건 이후로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번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경유차와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지금 폭스바겐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가지고 우리가 세 차례의 자료 보완을 요구했지만 계속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버티는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임의조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자기들이 명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임이자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느려서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크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징금 부과한 것 391억 정도만 내고 리콜해서 개선해 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시인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집단적 손해소송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요, 그 속셈은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장관님, 우리는 지금 자동차 부품 교체만 명령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리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부품을 교체……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50조7항 후단에 보게 되면 부품 및 자동차 교체도 명령할 수 있어요, 장관께서,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거 우리 보고서 9쪽에 나와 있듯이……

○**임이자 위원** 그런데 자동차 교체를 왜 명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질질 끌려다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자동차가 교체 명령 외의 방법으로는 따로 결함을 시정할 수 없을 때……

○**임이자 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넘기세요.

지금 인증서류 위조 관련돼 가지고 8만 3000대가 판명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인증된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인증되지 않은 자동차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미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인증된 차량입니다.

○**임이자 위원** 인증서류 위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인증된 자동차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임이자 위원** 우리가 민법 110조에 의해서 사기·강박에 의한 거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사기 아닙니까, 이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는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성인데 소비자들

은 적법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아니, 소비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서류 위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이걸 판매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소비자가 적법하게 샀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 사유는, 취소라는 게 결국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는……

○**임이자 위원** 아니지요. 의사 표시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그렇게까지……

○**임이자 위원** 좀 이따 보충질문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 배출가스 저감 임의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12만 6000대가 지금 리콜 대상으로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내뿜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 연구원을 시켜서 얼마나 더 나오는지 계산……

○**임이자 위원** 단순하게 지금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내 실험으로 했을 때는 km당 1.11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로5나 유로6, 유로5 같은 경우에는 km당 0.18이 정상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유로6 같은 경우에는 km당 0.08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봐도 일단 km당 1g 정도는 더 배출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5만km 정도 탔다라고 계산해 봤을 때 12만 6000대입니다. 그러면 일단 NOx 같은 경우만 벌써 6300t 정도,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그걸 계산해 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기오염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연구진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임이자 위원** 이게 언제 적 일인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이게 정확성이 있게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이렇게 해서 계산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지금 환경부를 보게 되면 자국민을 갖다가, 우리 자국민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번에 서류 조작한 것도 그쪽에서는 소송으로 가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송 가서 이길 수 있게끔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불리 하다……

○**임이자 위원** 개들이 소송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개정된 과징금 부과가 100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송하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억 원 가도 그 사람들 합니다. 10억 원짜리도 소송을 거는데 100억 원짜리 소송을 안 걸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한번 봅시다.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부·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환경부장관님께 공기청정기의 OIT 문제 하나 여쭙 볼게요.

한 달간 약식으로 위해성 평가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약식이고 정식으로 하면 뭘 해야 정식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약식은 여기 설명돼 있는 대로 대형 챔버에다 공기청정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약식이고요.

○**신창현 위원** 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표준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의미 있는 모수 집단을 대상으로 연간 계절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인별로 어

면 차이가 있는지를 다 다양하게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찾아내고 그 평균치에 대해서 위해성을 계산해야 됩니다.

○**신창현 위원** 공기청정기도 가습기살균제처럼 사람이 흡입해서 폐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흡입독성실험도 해야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흡입독성 부분은……

○**신창현 위원** OIT가 유독물질이니까, 지금 가습기살균제에 놀라 가지고 이 공기청정기 해프닝이 발생한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도가 그렇게 돼서 나온 거지요.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인데 놀란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거는 좋은데 똑같은 호흡기에 손상을 주는 물질이니까 정식으로 하면 당연히 흡입독성실험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우리 가습기살균제에서 봤던 그런 실험들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흡입독성실험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신창현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신 게 사실은 저는 우리 환경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필터명을 공개했다가, 그 필터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다음에 제품명 공개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그런데 그 제품명 공개했는데 특정 회사는 나중에 아니다 해 가지고 또 빠지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자동차 에어컨 쓰는 사람들 잔뜩 놀라게 해 놓고 나중에 7월 26일 날 브리핑하시면서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위해 우려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안심시키셨다는 말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국민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약식으로 조사한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 3개월, 4개월…… 지금 장관님 말씀한 대로 계절별로 위해성까지 평가하려면 1년씩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또 가습기살균제처럼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약식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약식으로 해서 그렇게 제품명 공개하고 전 국민 불안하게 만드시고 제품 수거 권고까지 하셨는데 정식 위해성 평가를 안 하고 있으시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이미 수거 권고를 했고 그쪽에서 수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적어도 OIT가 묻은 필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 그걸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될 겁니다.

○**신창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선 수거부터도 수거계획서를 대상 업체 10개 대상으로 8월 8일 날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간담회하면서 8월 11일까지 수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어요. 오늘까지 수거계획서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그러면 아직 수거도 안 했어요. 이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됐거든요. 아직도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제품 수거 권고까지 하셨는데 수거계획서는 왜 오늘까지 제출합니까? 벌써 다 수거를 완료했어야지요,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거했다 쳐도 정식 위해성 평가는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많은 회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위해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러면 수거 권고해서 수거한 회사들에게 적어도 정부는 ‘정식 위해성 평가 해 보니까 정말로 이러이러한 위해요인이 있어서 수거한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확신을 줘야지요. 제품 회수하니까 정식 위해성 평가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기업들이 수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냐 상대방이 할 것이냐가 남습니다. 자기가 제품을 계속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한테 입증할 책임이 그쪽에 있는 것이지요. 왜

냐하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도 그렇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에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해성 평가를 또 해서 내년 이때쯤이나 내놓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창현 위원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로 건강 피해를 입는 국민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는 제품을 회수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는 회사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회사들에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을 회수하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위해성 평가는 해야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면 됩니다. 하고 계속 쓰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반갑습니다.

노동부장관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석춘 위원 이게 보면 상반기에 목표 대비 62% 같으면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조선에 편중된 추경이 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지금 지방공단이 어떤 현황이지 장관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방 나머지 국가공단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역별 지방공단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제가 그중에서 중장년층, 이 부분이 보면 상반기에 37.4%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것을 더 확대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내 집행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중장년층 경

우에는 소득요건을 딱 규정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그만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요건을 풀면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선업종을 대비해서 중장년층 5000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 다른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수혜대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권고하면, 2017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반영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교육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석춘 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부실화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6개월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할 때 사람들이 6개월 기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보통 한 150만 원…… 장래에 대해서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본인이 거기에서 스스로 회의를 느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어제도 확인한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제도를, 이 취성패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업이 해외 이전을 하고 수도권 이전 하고—수도권 규제 완화가 촉발된 원인도 있겠지만—하면서 거기의 1차, 2차, 3차 업체들이 도산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도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를 갔는데 등록된 외국인 인원이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거 바로미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번에 추경이 조선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바람에 앞으로 노동부 예산 이런 부분이 좀 균형 있게, 그러한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훈련기관이 전문화되고 대형화되어서 받고 나면 소위 취업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해 가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장년들 경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면 내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고요.

특히 구미공단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지금 일자리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장년들에 대해서 취성패 등등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원래 정원이 120명인데 최대 270명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 부실화는 볼 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국회 통과하고 지역 통과하고 이러면 겨울에 상당히, 동절기에 제한된 일자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집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성패를 14년의 20만에서 15년에 30만으로 물량을 5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들이 1인당 상담원이 상담해야 될 인원이 늘었는데, 금년에 다시 정상화시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지역 일자리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고 추경이 편성되면 빨리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아까 노동부에서 주요 현안보고에서 갑을오토텍 문제가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이용득 위원 갑을오토텍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3시에 회사가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다만 불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천안지청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법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을오토텍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회사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감독관들하고 노조간부가 함께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면 7월 12일 날, 동원테크놀러지가 갑을오토텍의 협력사입니다. 저기 가서 갑을오토텍 생산제품인 에바코어 또 완성품인 HR-HVAC, 이 조립작업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동원테크놀러지에서는 수색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2차 방문을 했는데 동원테크놀러지 부사장 및 관리자와 면담을 했는데 현장에서 갑을오토텍 완성품이 적재된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작업라인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동원테크놀러지 임원이 대체생산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근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대차를 애용하는 국민들이 하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조시스템을 장착한 불량 차량을 타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시간이 조금 길니다. 한 7

분 정도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지요. 어느 정도 내용이 다 전달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득 위원** 아까 양해를……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용득 위원님, 이 정도에서 그냥……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수사하는 데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희들도 갑을오토텍 문제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약 190개, 1만 3000명의 갑을오토텍의 협력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이 안 됨으로써 벌써 8월만 해도 4분의 1로 생산이 줄어서 사실 월급받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급적 분류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본부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지속하겠고, 또 하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전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보내 주시면 함께 참고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예.

.....

○**위원장 홍영표** 마치셨습니까?

○**이용득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병 출신이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되신 조원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원진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환경부장관님, 지금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가장 피크 아닙니까, 지금이? 녹조현상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피크라고 하기는 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4대강 중에서 어디가 가장 심각한 편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영산강 쪽하고요, 낙동강 하류 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 댐 쪽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댐은 팔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조원진 위원** 충청권은 괜찮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청호는 좀 생기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녹조 관련해서, 워낙 폭염이라서 후에 녹조현상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지금 현 상황들을 주세요. 현재 녹조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원진 위원**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 녹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식수를, 그 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조원진 위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준다는데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서울시만 주면 나머지 도시들은, 나머지 지역 청년들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국무회의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서울시……

○**조원진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패키지사업들 있지요, 고용?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거기에서 고용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거기에서 청년수당 받으려고 그 만둔 청년들 몇 명이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35명 정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하려고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준다니까 그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 중심은 취업지원 쪽으로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정부의 큰 지원을 박탈할 기회도 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패키지사업을 받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취업성공패키지만 했을 때 약 19만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19만 명은 일을 해 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든지 그런 과정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돈을 50만 원 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한 50만 원 받아가겠다’고 나가는, 한 명이라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저희 중앙정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한 센터 안에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시도 곧 만듭시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 취업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상의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그리고 이 더운 날 가서 몇 시간씩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돈 준 것 술 먹으면 어떠냐고 그런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거기 지원한 6000명들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발표한

것 보면 ‘자격을 취득하겠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자격을……

○**조원진 위원** 그 문제는 고용부장관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요.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전 국가가 청년실업에 목매고 있는데.

아니, 개별문서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파악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보고 그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해 보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게 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지만 방향이, 한쪽이 독이 무너지면 일반 평범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이, 노력하는 청년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명이 패키지 이것을 하고 있다가, 그 과정을 밟고 있다가 그냥 돈 50만 원 받으러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조원진 위원**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요. 지금 청년 취업애로 계층이 12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40만, 다 합쳐서 40만 정도입니다. 나머지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더 넓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촘촘히 지원을 해야 한다 보고 있고 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주어진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현안보고 했었던 OIT 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워스트(worst)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상정해서 실험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뒤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최악의 조건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 시동 걸어 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시고 그다음에 챔버 안에서 에어컨들은 측정하시고 한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악의 조건이라는 게 이

령습니다. 자동차……

○**한정애 위원** 최악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동차는 우리가 외부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8시간씩 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공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여기서는 8시간 동안 문을 딱 닫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의 강풍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이 최악의 조건이지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에어컨을 켜거나 할 때는 보통 실외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도 일정 시간마다 산소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지금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OIT 항균필터라고 되어 있지만 항균 작용을 하는 해당 물질들은 거의 일정시간 안에 다 방출이, 떨어져 버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위광고에 불과하고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찌 보면 축적된 농도의 위해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항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은 전혀 못 하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항균필터를 우리가 거의 한 1만 km 정도 타고 나면 교체하거나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아무런 효과 없는 그냥 필터를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항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항균으로 쓰는 것은 필터에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기의 살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지요. 그런데……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필터로서의 작동만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필터로서의 작동만 하

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위광고, 오히려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밝힌 다음에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환노위에서 올리고 해서 50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반대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버스가 싱크홀이 발생을 하니까, 15년에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화면도 하나 보시겠어요?

15년에 구로구 청솔아파트 정문 앞에 보시면 저렇게 싱크홀이, 여기저기서 노후하수관거로 인한 싱크홀, 지반침하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안전상에도,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책정을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기 배정된 목적예비비이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예산이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서야 기재부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이것을 청구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너무 늦게 내려 주고 나면 사실 나중에 또 예산 다 못 썼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제 기간 내에 해당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본 환경영향평가가서 접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죽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

려가 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국립공원을위원회 심의자료에 들어갔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이나 희귀식물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본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한 내용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그냥 양양군에서 제출한 대로 이것은 양양군이 사업 주체이고 시행하는 곳이니깐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설악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갈등조정협의회도 케이블카 반대하는 측도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구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발족이 될 테니까 거기서 아마 폭넓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 주시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냥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지금까지 4대강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임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먼저 환경부장관님.

폭스바겐 임의설정, 조작 문제 그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 기간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해서 배기가스가 문제가 없게 나오는데 실주행할 때는 그 조작장치가 작동을 못 하게 해서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조작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제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EGR 작동하게끔 하는 신호를 넣으면 그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이고 또 작동 안 하게 하는 데는 전자적 소스코드가 있을 것인데 이 소스코드를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이미 짐작을 했고 확인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소스코드를 확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확인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밸브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리턴시키는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고온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열려 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河泰慶 위원**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좀 더 명확히 입증을 하려면 소스코드 밝히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가 그쪽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압수수색 하고 그런 거 안 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압수수색 한다고 여기는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국내에는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내 폭스바겐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독일도, 이게 보쉬에서 납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있다면 보쉬에 있을 것입니다.

○**河泰慶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쉬.

○**河泰慶 위원** 보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취성패 1년 예산안,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1년 예산이 한 1조 전후가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가 그렇고 관계 부처까지 합치면 2조 1000억쯤 됩니다, 전체.

○**河泰慶 위원** 그러면 노동부 관련해서만 지원을 받는 총 청년 숫자가 아까 19만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취성패로 19만이고요, 저희가 전체 인턴도 있고……

○河泰慶 위원 몇 명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로 하면 약 30만……

○河泰慶 위원 30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30~35만 정도 됩니다.

○河泰慶 위원 1년에 혜택 받는 사람을 30만으로 치면 취업하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사업별로 다른데요. 훈련받은 경우는 국가기간산업만 한 60% 또 내일배움카드 쓰는 한 50% 전후……

○河泰慶 위원 한 1만 명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취성패는 한 65%, 이렇게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인턴은 거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河泰慶 위원 그러면 30만 중에서 60%면 15만이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인원 다 합쳐서 하면……

○河泰慶 위원 꽤 많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 연결고리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촘촘히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수당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조원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문제의식은 그래요. 이게 서울시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이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자기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수당 성격은 제가 보면 좀 애매한데 취업지원도 아니고 그냥 청년들 자아실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그랜트(grant)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전국 시도·광역을 다 모아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 다 내서 전국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청년 그랜트 이런 사업으로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굳이 이것을 대립하지 말고 서울시, 성남 마찬가지로 그래서 돈이 많은 데는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그랜트 사업을 펼치는 청년 자아실현을 위한 그랜트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채용비리 근절이 안 되는데 제가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저희들이 선거비리 뿌리 뽑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게 벌금입니다. 최대 5억까지 막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일부 받아먹으면 몇십 배인가요, 하니까 지금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저희 노동관계법 위반하고 이렇게……

○河泰慶 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형평성 문제하고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고용세습도 보니까 ‘시정’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벌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올려야 된다, 청년실업 시대에 청년고용장벽을 형성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래서 벌금도 상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관련해서 간략히, 청년수당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할 때 제가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세 가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20만 명인데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해야 할 서비스는 중심이 취업지원 서비스다, 이것은 민간이 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만 이번에 서울시가 약 3000명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는 문제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어떤 서비스안으로 계획만 보고 그 계획대로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3000명이지만 그때 시장계서도 그런 애로계층이 서울시만 50만 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을 거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해야 될 청년 지원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취업성공패키지 만 해도 19만 명, 인턴 5만 명 그다음에 국가기간산업훈련 5만 명 이렇게 죽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으로 되게 되면 아까 35명이 저희 취업패에서 취소하듯이 본류의 취업지원사업에서 빠져나가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가 청년을 지원하는 것 중에 청년의 지원과 또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기업으로 취업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는 이 기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으니 그 자원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청년에 대한 상세정보를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취업패나 훈련이나 국가가 하는 기능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 있다면 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융합된 서비스다 그런 제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서울시 쪽에 6000명에 대한 자원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30초만……

장관님 말씀 일리가 있고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청년들의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현실에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취업지원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 자아실현 이런 지원 같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서울시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전국 청년들한테 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동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각 시도를 다 모아서 적극적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간 2단계로 기본 상담을 하고 2단계 준비단계가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창업 지원,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도 다 지원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약 1900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 사업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를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갑을오토택이 직장폐쇄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단 파업 이후에 해서 외형적으로는 방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파업 이후에 했기 때문에 방어적이라고 보아지는 한데 그 과정은 저희들한테 고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좀 정밀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지요? 뭔가 이게 방어적인 직장폐쇄라 그러면 당연히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텐데 갑을오토택의 직장폐쇄는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2003년 평화택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못 하게끔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갑을오토택 사례를 보면 일단은 전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법원의 그 판단은 뭐냐 하면 이 대표이사가 노조 파괴와 증거인멸들을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법원이 회사의 업무방해 가처분신청도 기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노조 파괴 전략문건인 Q-P 전략 시나리오도 폭로가 됐고요. 방금 전에 이용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함께 가서 확인을 했고 그쪽 회사에서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갑을오토택의 직장폐쇄라는 것은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만을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 안정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났다는 게 법원 판단과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직장폐쇄 신고를 반려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와 또 직장폐쇄의 방어적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고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대체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강병원 위원 보니까 박효상 전 대표의 형이신 모양이지요, 박유상 씨라는 분, 친형쯤 되시나요? 그분이 경찰·검찰·고용노동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회사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다니고 있다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시거나 전화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강병원 위원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나 천안 쪽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연락을 받거나 만나신 적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장기간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전임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그런 일 없으리라고 보고 당당하게 엄정하게 노든 사든 위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고 다만 분류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꼭 좀, 방어적 목적의 직장폐쇄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리고 몇몇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이 한 90억입니다. 3000명 대상이고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주자 이런 내용인데요. 하태경 간사께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런 청년수당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가 우리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관께서는 오히려 나서서 가지고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에 총대를 메고 전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했던 게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이 더 촘촘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서비스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시간이 흐르면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 유럽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고요.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는 시험 준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직업 훈련 등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직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실적을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4년도 취업패Ⅱ 참여자 6만 5156명 중 취업률은 64.8%였습니다. 월 임금 150만 원 이상 종사자의 비율이 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력은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직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임금의 단기간 일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본인 스스로 더 준비해서 새로운 더 양질의 직장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빈 곳을 채워주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 이것을 못 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업패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합심을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그때 서울시장께 제의한 것도 우리가 70% 다른 자치단체가 30% 하는 것에 대해서 기속사랄지 근로조건 향상을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괜찮은 근로조건을 향상을 해야 청년들이 가고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현금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취업 준비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취성패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 심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께서 언론에 이렇게 사회식으로 말씀했던 내용 기사를 보면 상당수가 공무원·교사·경찰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 문제 중의 하나가 120만 명의 취업애로계층 중에 30% 정도, 30~40만 명이 공공부분의 공무원·경찰·교사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상당수를 민간의 첨단산업 쪽으로 가도록 해 주는 것도 청년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중앙정부·지방정부 함께 모여서 이 청년에 대해서는 창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종합 대책을 하자라고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청년에 대한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보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해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보다 섬세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환경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때문에 이 폭스바겐을 다시,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질문을 차곡차곡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아우디폭스바겐사가 배출가스의 임의 설정 조작과 관련해서요, 15개 차종의 인증 취소와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

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리고 형사고발도 했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형사고발도 두 차례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이후에 1월에 결함 시정명령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리콜 명령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나 8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도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종 리콜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폭스바겐이 과징금 부과까지 완료했음에도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장관님은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정하는 순간 그 책임 문제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아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리콜계획서 두 번 제출했지만 두 번 다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고 또 그 이유가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 제출을 안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문진국 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해야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법에 의한 가장 강한 수를 지금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문진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문진국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은 자동차 인증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아까 답변했었고요. 2009년부터 판매된 차량인데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저는 쉽게 이해가 지금 안 돼서 묻고요.

환경과학원이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 위조 등 불법을 찾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는데, 서류 접수를 지금 과학원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문진국 위원** 과학원에서 서류 접수할 때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접수만 받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현안보고서 12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예, 아까 읽어 봐서 그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12쪽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시는데요.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12쪽의 그것을 보기 이전에 인증서류 접수만, 이렇게 문서만 받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일인데 깊이 더 봤으면 어땠을까 해서 제가 지금 묻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증절차가 솔직하게 지금 너무 허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장관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인증절차가 허술하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덧붙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1이라고 쓴 것을 2로 고쳐 가지고 저희한테 냈는데 이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저희 접수된 서류에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진국 위원** 장관님, 그래서 폭스바겐사가 우리나라와 국민을, 솔직히 제가 첫마디 했던 것이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첫마디에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부는 지난 7월 11일 위조서류로 인증받은 차종과 관련해 인증 취소 예고도 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고가 아니라 청문을 하고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나 폭스바겐은 약 1000만 원 가량의 할인판매를 해서 7월 달에만 아우디 1504대를 판매를 했고요, 폭스바겐 424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차량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팔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법적으로 인증 취소를 하기 전에 판매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바로 이 폭스바겐사가 지난 7월부터 아주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판매에 이어 국내 택시서비스회사와 3개월간 프

로모션 제후를 맺었고 또 폭스바겐 이지 라이드 (Volkswagen Easy Ride)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료 시승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이 무료 시승 시스템을 보면 택시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휴대폰 앱으로 콜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폭스바겐의 불법인증차량이 출동해서 무료로 택시를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리가 떨어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장관님,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디메틸……

○**김삼화 위원** 디메틸폴리실록산, 최근에 소포제……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소포제.

○**김삼화 위원**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발전소에서 온배수에 섞여서 배출하는 거품제거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포제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지금 정부부처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규제 기준이 지금 제각각인 것 같은데 환경부는 이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해서 어떤 규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자료를……

그 자료는 지금 유독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삼화 위원** 예,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의 자료를 좀 보시면 똑같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놓고 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로 해양 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산업부는 금지가 아니라 ‘배출 허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이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물질로 이것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준이 없는 거지요.

혹시 2015년에 발전소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 해양 배출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던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모르겠는데요.

○**김삼화 위원** 모르겠어요? 고발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평택지청에서는 서부발전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이 물질을 배출한 것은 맞는데 배출 제한물질이고 그런데 배출 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불기소처분을 했고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산지원에서는 중부발전, 발전소만 틀리지 똑같은 물질입니다, 중부발전에서는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의 배출 허용기준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 검찰과 사법부도 이 디메틸폴리실록산 규제 기준을 놓고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식품첨가물로 허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미국 FDA에서도 소포제를 식품에 일부 허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수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발전소가 사용하는 소포제가—아까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소포제인데요—유해물질이다 그러면 환경부가 그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유해물질로 같이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실 정도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부처별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 좀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유독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물 지정된 것은 유독물이고 지정이 안 된 것은 무독물이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유독물 지정기준 이상으

로 독성이 있을 때 유독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하의 독성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유독물 지정기준에 상당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경구시험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경피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해양 배출도 원천적으로 금지될 정도로 해수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선박에서는.

혹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이용해서 양식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것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는 유해물질이라고 배출을 못 하게 하고 산자부는 유해물질인데 제한물질이기 때문에 일정한 배출조건을 충족하면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환경부는 전혀 규제 규정도 안 갖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해양부에서 본 대로 이게 유해물질이 맞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온배수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유통돼서 이게 유독물질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 미비 때문에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산자부·환경부 쪽에서 법령을 제대로, 미비했다는 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 지금 이 문제도 해수부·산자부·환경부·식약처가 서로 동일한 물질을 놓고 규제 기준을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각 부처가 부처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유독물질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보여주신 대로 식약처에서는 먹는 데까지 쓰게 하지 않습

니까? 말하자면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예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가 된다면 각 개별 법에서 적절하게 규제가 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수부하고 산업부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클리어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전소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각 부처가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정미 위원** 먼저 화면 두 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노동부장관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5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Q-P 보고서, 갑을오토텍 회사가 창조건설팅이라고 하는 노조 파괴 회사 출신이었던 김영철 씨가 대표로 있는 예지라고 하는 노무법인의 협조를 얻어서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일련의 시나리오는 철저하게 노조를 회사와의 협력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노조를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노동부에서도 검토한 문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십시오. 작년에 있었던 갑을오토텍이 특전사 출신, 경찰 출신들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림들입니다. 저기 있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평균 근속이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이 회사의 사업주가 다섯 번 바뀌는 동안에 이 회사를 지키면서 갑을오토텍을 성장시켰고 5년 전에 갑을오토텍이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꾸준히

이 회사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뿌린 보도자료, 이 사람들이 1년에 9000이 넘는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는 달리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3인 가족이 상식적 수준에서 먹고살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나,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임금 3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노동자들이 왜 이런 폭력사태 그리고 2년 동안 이 지난한 과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잘 강구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정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대로 하고……

○**이정미 위원** 예,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이 사태에 대해서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 아니 장관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언론을 향해서 기자회견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노조 주장 일부 수용해서 경비원, 직장폐쇄 이후에 배치한 경비원들을 즉시 철수한다, 이것 원래 불법이었기 때문에 즉시 철수해야 되는 일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이정미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리직 사원들, 이분들은 누구냐면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 이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빼고 관리직 사원들은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동조합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

용·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에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되어 있습니다. 경비용역을 고용할 때도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모든 법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채용하고 투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시도를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회견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폐쇄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무조건적인 생산 현장에 복귀한다면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있다고 회사가 요구했는데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해 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회견문에 담아 놓았습니다.

장관님,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쳐서 파업을 시작했다가 파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회사 측에게 완전히 굴복하거나 두 번째는 노사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해서 노사 간에 합의사항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노사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쟁의를 그만두고 현장에 복귀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회사 측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한지 아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직장폐쇄와 그다음에 복귀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파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 행위로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제가 직장폐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할 때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야지 중단을 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든 사든 엄중히, 과거에도 엄중히 했고 앞으로도 엄중히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섭을 주선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두 가지 틀에서 다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저는 교섭의 주선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회사가 적어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노사 간의 평화적인 협상으로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상당한 근로감독 그리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2014년부터 굉장히 가혹한 노조 탄압 행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부나 회사 측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부가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소·고발 건에 대한 판단과 노사 간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우선 지금 이정미 위원 질문하신 갑을오토택 문제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개별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본부의 주무과장을 내려 보내서 다 양측을 접촉하고 이유 불문 어떻든 타협을 통해서 사태는 수습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아무튼 우리가 노동삼권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취지를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파괴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기업주의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노동권을 존중하고 또 기업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홍영표** 지금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 그래서 녹조 문제가…… 올해 더구나 날씨가 폭염이어서 심각한데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2014년도에 운영이 됐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평가위원회를 총리실에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니까 지난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기보다는 녹조나 이런 것은 심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 홍영표** 심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내려서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홍영표**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그럴 시기 아닙니까? 매년 이게 지속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보를 만들기 전에도 낙동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류 쪽은 녹조가 심했습니다. 중·상류는 거의 안 생기거나 약했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거꾸로 하류 쪽은 녹조가 덜하고 중·상류가 과거보다 심한 이런 양상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과거보다 지금이 주요 상수원에 있어서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아래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아래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요 과거보다 더 심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낙동강 하류도 과거보다 그러면 완전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상류 부분은 주민들의 취수 문제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부에서 정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녹조건 뭐건 얼마든지 다 물

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폐수를 가지고 물 만들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아마 저는 환경부에서 직접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시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보면 4대강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녹조라든가 BOD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 아닌가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시다만 수질만 본다면 아래와 위, 상류와 하류가 이렇게 다른 양상이 있고요. 또 가뭄 때는 물을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완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을 낸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아무튼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은 어렵습시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현장도 가 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추가질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40분이니까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5분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뭐…… 비가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앞으로 잘 해 보자고 한 마당인데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 비디오를 과하게 틀려고 했을 때 제가 ‘용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평소에 풀면 풀리는 것인데 쌓아 둘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에서는 그때그때 잘 풀어 가지고 불필요한 장애 요인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좀 더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신뢰 강화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우리 상임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IT 문제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기왕에 쓰는 제품에 대한 수거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정식 위해성평가를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장관님이 인정을 하셨듯이 지금 OIT라는 물질이 어떤 제품을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서 확인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약식 위해성평가를 한 판매사나 제조사가 아닌 다른 판매나 제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OIT가 함유된 제품 자체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OIT 자체 물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아까 현안보고 1쪽에 있습니다마는

방부제라든지 산업용 금속가공액, 가정용 페인트 보존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 말고 오늘 또 확인을 해 보니까 항균성 필터만 제조하는 회사가 한 10개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이번에 평가 대상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에 쓰이는 판매사는 아홉인데 제조사는 3M하고 씨앤티수성진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항균필터 자체를. 이 두 회사 말고 지금 현재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 자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라든지 평가 자체 없이 이번에 대상이 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수거한다고 해서 정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성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번에 사실 평가한 것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거 권고 대상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M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OIT가 나오지 않는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험하니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M에서 OIT를 사용했던 필터들은 우리가 시험했든 안 했든 다 수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 이게 3M 말고, 지금 현재 실제 항균성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3M이나 요즘 두원 말고 다른 데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위해성 평가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은 회수하겠느냐, 아니면 시험해 보겠느냐……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정식 위해성 평가를 안 하시겠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실제 OIT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항균필터 자체가 어떻게 지금 생산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일단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정식 평가를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이 할 만큼 거의 다 했는데 혹시 더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겠

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에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양양군에서 올라온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에 보면 원래 작년 8월에 했을 때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 제가 보고받기는 바뀐 부분이 예를 들면 훼손 면적, 직접 사람이 파헤치거나 이렇게 훼손하는 면적은 좀 줄어든 거 같고 거기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뭐 날려 가거나 이래 가지고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적은 좀 늘어난 거 같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우선 공사 총 사업비가 원래 460억에서 587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억이 넘으면 일단 심사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검사 해야 되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뭐 그게 국고냐 지방비냐에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서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늘어난 금액이 127억인데 그중에 111억이 헬기 운반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운반비 자체가, 처음부터 반영돼 있을 게 빠진 것 자체는 제가 보니까 일부러 500억 미만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심중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헬기로 이렇게 바꾼 거 같고. 여러 가지 뭐……

○서형수 위원 아니, 친환경…… 지금 보면 케이블카를 놓는 데 헬기 동원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운반할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운반비가 항목에 없어요, 원래 안에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알기로는 헬기를 안 쓰고 육로로다 올라가는 게 더 싸입니다. 훨씬 비쌌습니다, 헬기가.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육로로 올라가는 운반비가 원 초안에 지금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운반비가 없는 게 지금 다시 111억이 나온 거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뀐 상태에서도 경제성을 평가

했던 KEI라고 있는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보니까 역시 B/C는 1.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신보라 위원 주경 관련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1년 2개월이 넘는데 어떤 청년층의 취업, 고용 유지, 자립 이러한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거 같습니다.

장관님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본질적으로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본질적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19만 명, 금년에는 아마 한 2만 명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만, 딱 청년들에 대해서 한 것만 했을 때.

1단계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청년들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에 대해서 진로지도, 방향성을 좀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단계에서 인턴이든 직업훈련이든 해외취업이든 소위 본인 희망을 감안해서 또 창업이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정부가 지원하에, 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도 좀 지원하에, 메인은 본인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훈련받을 때는 40만 원 수당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본인 계획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어학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동아리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생략된 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는 국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면서 하는 게, 주와 보조가 달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취업지원 서비스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주가 빠져 버리고 거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 주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도 저희들이 그 6000명 가지고 우리가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가장 좋은 서비스가 뭔지 상의를 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하질 않아서……

○**신보라 위원** 저도 상호 의무를 전제로 한 취업상담,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 프로세스를 어쨌든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많은 청년층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와 혜택을 좀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도 이 취업패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정말 기회인 거 같습니다. 취업패가 얼마나 청년들에게 취업으로 가는 골인 지점을 갖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인지를 잘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보라 위원** 예, 그리고 청년수당을 신청한 청년들도 어쨌든 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말하자면 35명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청년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한테 그 6000명을 자료를 같이 놓고 자격을 희망하는, 거기에는 몇천 명이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훈련 과정을 하는 건 자격 딸 수 있는 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면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에 서비스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제가 많은, 취업패 쪽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 봤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업패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계비라도 벌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뛰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취업패는 그게 좀 불가능하니 그래서 청년수당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되

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분명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해도 가능하고 비정규직으로도 일해도 취업패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35시간 이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걸 정확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들이 여전히 컨설턴트들에게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일자리 골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컨설턴트의 문제도 아직 많은 극복이 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도 올해서야 좀 구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민간 위탁기관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관련한 보완 대책들을 저희 의원실하고도 함께 같이 논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청년을 저희가 하다가 작년에 청년을 민간한테 주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민간들이 하는 기간이 불과 1년 반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민간 상담사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부분 등등 종합적인 대책, 또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과정의 보완 등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신창현 위원** 지난 3월 달에 노동개혁 인턴지침 홍보 동영상 촬영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신창현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장관님이 직접 가서 가지고 촬영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준비하고 일정이 와서 제가 옷 몇 개를 준비해 가서 했습니다.

○**신창현 위원** 어디예요, 그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 데가 학교였습니다. 찍는 장소……

○**신창현 위원** 학교 가서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찍는 장소.

○**신창현 위원** 그 동영상 만든 회사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신창현 위원** 대변인, 기억하세요?

안 계세요, 누구 실무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오늘은 예산 관련 실무자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 회사 이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OIT 문제에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이 약식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해서 그래요. 이번의 OIT 약식평가는 소요기간 약 1개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이렇게 노출계수와 노출시나리오 가지고 위해도를 산정하셨잖아요. 이 약식평가 지침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전문가 그룹들이 일반적으로……

○**신창현 위원** 현행 규정은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약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접촉제, 리트머스 방식의 간이조사 해 가지고 1만 2000ppm 나왔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다가 조치하라고 했는데 기술표준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전부 다 기준치 이하였잖아

요.

제가 사실 환경부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왜 자꾸 약점 잡히는지 저는 좀 화가 나서 그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번에 또 약식평가, 규정에도 없는 약식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제품을 수거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아, 오전이 아니군요. 제가, 아까 회의 때 장관님 답변하시기를 업체가 무해를 입증하면 된다고, 이미 제품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말씀 하시고 할 때 제가 또 한 번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 장관님 주신 자료대로 3년에 걸친 상세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결국 써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을 때는 업체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받은 이미지 피해도 있고 또 영업 피해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업체의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에 이 3M에서 제공한 항균필터를 쓴 소비자들, 여기 지금 특수사용자라고 해서 신생아나 택시기사들은 최악의 조건은 아니라도 장시간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민감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잖아요. 이제까지 공기청정기나 자동차 에어컨 사용한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정식 평가를 해서, 상세 평가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이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업체가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 지금 상세 위해성 평가를 하려면 한 6억 원 들여서 3년씩 걸린다는데 그렇게 3년씩 안 해도, 우리 가슴기살균제 동물독성실험할 때 28일 흡입독성실험 하고 최장 90일 독성실험 했습니다. 3개월이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위해성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위해성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아 글썄,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은 유해성이냐 위해성이냐 하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건강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장

기간 자동차에서 3M 사용한, 자동차 에어컨용 필터를 사용한 택시기사에게 그거 때문에 나한테 혹시 폐 손상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 지금 궁금한데 그것만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정도는 3년씩 안 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방법을……

○**신창현 위원** 그걸 좀 하실 용의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의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개월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신창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이 약식 위해성 평가 1개월짜리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1개월 정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공기청정기나 택시 에어컨 필터를 사용해서 내 건강에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거, 우선 흡입독성 이 부분에 한정해서…… 왜? 피부독성은 사실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에 폐나 호흡기에 미쳤을지도 모르는 악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라도. 그러나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돈도 많이 안 들 거예요. 그거 한번 좀 꼭 할 용의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1쪽에 있습니다만 미국 EPA가—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 됩니다—반복흡입독성 90일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강에 영향 정도가 있다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걸 더 찾아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더 찾아내려면 흡입독성부터 다양하게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화평법상 그런 시험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의무는 이미 사업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위해성 심사를 기존 물질에 해오다 보니까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번 법에서는 사업자한테 그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쓰겠다, 계속 OIT 가지고 필터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화평법상 자기가 유해성·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화평법 규정에도 없는 약식평가 1개월 만에 하셨지 않습니까?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국민들의 불안이 워낙 고조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3M이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한 결과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면 다시 흡입독성서부터 시험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3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 최악의 조건으로 약식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약식평가 이거 취소를 하고 다시 정식 위해성 평가를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신창현 위원** 장관님, 제 질문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신창현 위원** 법의 규정에도 없는 1개월짜리 약식평가를 하신 장관님이 국민건강에 피해가 있을지 없을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2~3개월짜리 평가 한 번 더 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3개월에 안 됩니다. 왜냐? 흡입독성서부터 시험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신창현 위원** 3개월이면 충분해요, 흡입독성실험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기 보시면 급성도 있지만 아만성도 있고 만성도 있습니다. 아만성이 90일입니다. 만성까지 하면 몇 년을 해야 됩니다.

○**신창현 위원** 정말…… 시간 오래 가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 OIT 자체에 대한 실험, 이것이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가 이 얘기는 오늘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OIT가 2014년도에 유독물로 지정이 됐고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고시라는 방식으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영업 허가라든가 수출입을 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이것이 인지가 되지만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이 물질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체계가 각 기

업으로까지 다 잘 진행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화평법상 공급자는 그걸 공급받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미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기업 들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재……

○**이정미 위원** 실행되고 있는 기업들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최초의 안전성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필터가 비관리 품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캐치가 안 됐던 상황이었지요. 사각지대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비관리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 길도 없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산업부가 부속품이나 부품까지는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그 분야를 가져간 상태인데, 실제로 산업부 자체에서는 이런 유해성 심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 역량을 꼭 직접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웃소싱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 자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질과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체제가 지금 일원화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존은 화학물질 자체는 저희고요, 그걸 가져가서 사용할 때는 산업부 또는 복지부, 농림부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생활용품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대부분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OIT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는 제품안전관리청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의 경우에는 이 물질을, 원료에서부터 제품 과정 전반에까지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것을 일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산업부는 산업진흥에 관한 자신의 역할들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전문적인 인력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업무는 환경부가 촘촘하게, 뭔가 그러니까 칸막이도 없고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013년도에 화평법과 화관법이 분리되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자신들, 제품들의 유해성 물질을 다루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안을 주는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일원화 방안,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지금 일상생활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촘촘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어 볼 수 있는 대안들을 하루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매번 건건이 터질 때마다 이게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것은 굉장히 책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습시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앞서 질의하신 이정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본 의결실로도 좀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주질문에 이어서 환경부장관님, 아까 인증서류 위조 8만 3000대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하고 폭스바겐하고 처음에 거래할 당시에는 인증된 차가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나 7월 달에 검찰에 의해서 인증서류가 위조되었다라고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증된 차가 아니지요? 이게 사기에 의해서, 인증서류 위조는 사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게 유효했던 기간에 산 소비자한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글썄,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에 의해서 인증서류 위조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증서류가 조작되거나 아니면 위조됐다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안 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적이든 어쨌든, 내가 안 살 수 있는데 이걸 샀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걸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소비자 중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심에서.

그랬을 경우에 자, 그러면 나는 사기에 의해서 이 차를 샀으니까 민법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에 의해서 한 부분은.

그러면 취소했을 경우에 우리 환경부는 폭스바

겐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인증서류를 위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178억을 부과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소비자는 내가 이걸 인증되는 걸 알았다더라면 안 샀을 텐데 산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손해를 입었던 말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겠지요.

○**임이자 위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물론 승소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소비자에게, 어쨌든 환경부의 관리 소홀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이걸 어떻게, 이 비용이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가의, 환경부의, 정부의 작위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또 입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178억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이겠지만 소비자가 정부의 작위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위법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해가 사실상 발생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폭스바겐, 조작을 자행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변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글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가 한다는 게 됩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거는 조금……

○**임이자 위원** 아니, 국가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인증서류가 위조되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작위행위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손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하신다면 나라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못 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국민이 피해 봤을 때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늦게 발견됐지만……

○**임이자 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46조에 의하면 직장폐쇄 관련돼 가지고 시기 문제하고 신고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장폐쇄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갑을 오토텍 같은 문제도 공격적 파업이나 방어적 파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게 공격적 파업이나 아니면 방어적 파업이나 이에 대해서 정당성이 가려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 요건이 지금 미비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법의 요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환경부장관께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 보겠습니다.

물론 요새 조선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획 조정같이 배를 몇 척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당 상수원 관리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국립공원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 조사·연구용으로 조사선 5t급을 건조해서, 8억 원 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낙동강에 보가 8개 있어서, 호수 8개도 있고 그러니까 배가 보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잘 설계해 가지고 차에 신고, 배를 신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한번 설계를 해 봐라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게 도무지…… 그리고 낙동강 생물자원이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최상류인데 나는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이미 낙동강 하류에는 환경공단 소유의 배가 2척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담수어종 조사하는 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거기대로 목적이 있거든요, 방지용으로.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 논리대로 할 거 같은 수질 감시 배도 8개 호수마다 1척씩 다 있어야 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안 하도록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환경부장관 윤성규**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상돈 위원** 어떤 주문을 해 놓았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배를 차에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이상돈 위원** 참 이거, 누가 들으면 이거 만화같은 얘기 아닌가요? 배를 차에 신고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위원님, 외국에 가보십시오. 배, 뒤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위락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은 이미 배를 죽 썬 왔지만 배를 관리해 본 적이 없는 기관에서 과연 이걸 썬서 얼마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지 그런 걱정이 들고 이 예산 속에는 또 뭐, 글썄요, 이게 나는 좀……

문제는 낙동강에다 쓸데없는 보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수질 감시 이런 거 만들고 억지로 녹조 치우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장관은 좌우간에 4대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개각 얘기도 있고 하니까 차기 장관 또는 차기 정권과 이 문제는 다뤄야 될 거 같습니다. 좌우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되겠는데요, 8월 19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상돈 위원**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해제를 다루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게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경포도립공원하고 낙산도립공원의 해제 문제를 거기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지금까지는 10년 주기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돈 위원** 아니, 공원을 해제한 적이 있냐고요, 대규모의 도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제, 평가가 아니라.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역조정을 해서 면적은 많지만……

○**이상돈 위원** 구역조정을 했지만 통째로 해제한 적이 있냐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산불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면밀한 조사를 강원도에서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강원도에서 조사했는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할 때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심사 할 때는 19일 날 그냥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국립공원위원회가 방침을 세워서 또다시 한

번 숙고하고 절차랄까, 조사를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 그 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부장관의, 환경부의 어떤 철학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판단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립공원 해제는, 대규모의 공원 해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립공원 해제가 아니라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

○**이상돈 위원** 자연공원이지요. 자연공원은 처음이기 때문에 나는 환경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앞으로의 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막연하게 도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서, 도에서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 정부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경부장관은 그냥 ‘이거는 위원회가 한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이거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부의 기본적인 범을 집행할 수 있는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하고요. 그래서 태백산도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이번 8월 22일 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상돈 위원** 지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해제하는 것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정을 하면 또 가치가 없는 것은 해제할 수도 있어야지요.

○**이상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환경부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 해제하는 철학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그런 거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8월 19일 날 경솔한 판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한정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성기업에서 만들어진 제2의 노조가 이게 사업주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제2노조 설립은 무효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바로, 그것이 4월 14일 날 있었고 4월 19일 날 제2노조의 집행부였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집행부, 유사한 규약, 동일한 노조사무실, 동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천안지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이 우리가 몰랐던 사업장도 아니고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천안지청에서는 이것을 노조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느냐,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본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유사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4월 19일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회의를 해 가지고 열 시 몇 분까지 합니다. 그 시간은 유성기업이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을,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시간이지요.

그 시간대에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분명히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안지청에서 본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노조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어차피 지법에서 이런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설립신고서를 받았을 때 지체를 하면 안 된다, 보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설립신고서를 내줘야 된다고 본부가 답변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구체적인 개별사업장의 노조설립 신고까지는 제가 상세히 깊이 파악은 못 하는데 필요하면 저희 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유성기업이 결국은 제3노조가 생겼고 여전히 유성기업은 노노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사합의 관련한, 노사합의서 효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을오토텍이 갑을그룹이, 갑을상사가 인수하기 전에 존재했던 노사합의서, 그러니까 그게 단체협약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법에서는 합의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냥 협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온갖 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에 실시했던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청에서 이 부속합의서, 노동조합에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2008년에 합의한 합의 내용의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를 물었을 때 천안지청에서는 이게 합의가 된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갑을그룹이 이 해당 업체를 인수할 당시에 노사 간에 체결했던 온갖 단위의 합의 부분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안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지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노동부 본부까지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갑을의 사업주가 다시 노동부 본부에다 질의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체로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2년이라고 하는 효력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재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력은 효력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이, 결국은 갑을오토텍의 지금 노사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거에 저는 노동부가 이렇게 같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그거는 법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재량을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구체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한정애 위원** 잠시만요.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결정적으로 보면 천안지청에서 처음에 해석했던 내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부 본부가 사측에다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이번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부가 왜 이렇게 노사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조합 설립만 해도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서 명백하게 법에 소위 설립인가를 내주지 아니할 요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하고 법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장, 동일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일한 조합원, 동일한 규약 내용을 가지고 신청해 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갑을오토텍의 경우에는 경비 외주화 문제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단협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단협을 이행하라 마라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지청이 제대로 해석을…… 이번에 지방법원에서 해석한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 본부가 잘못된 해석을 다시 한 번 내리는 바람에 지금 사 측은 사 측대로 상고하겠다, 항소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동일한 사람이 A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고 B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정애 위원** 아니, 지금 갑을오토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다음에 갑을오토텍 해석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왜 달리 했는지를 해당 국에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을 해석하는데……

○**한정애 위원** 장관님……

아니요, 지청과 본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지청의 해석과 본부의 해석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공문 만드실 때마다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위대한 노동부의 여정입니까? 헛갈리는 여정이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여정인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본부에서 왜 달리 했는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갑을오토텍 제가 이번에 현안질의 들어와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갑을오토텍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기능직이 2015년에 8400, 경비가 9100, 식당 일하는 분들이 7200, 운전 7800, 2016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유가 파업을 오래 했고, 33일, 직장폐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상위 10%에 속하지요, 소득분류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10% 근사치에……

○**河泰慶 위원** 그래서 과거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닫고 있지만 노사 갈등이 강자와 약자 싸움이 아니다, 이게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정말 힘든 사람……

장관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갑을오토텍 불법에 대해서는 사 측, 사 측은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노동자 측도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갑을오토텍 단협 체결한 내용 중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체로 저렇게 연봉이 높은

회사들 보면 청년고용이 적어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기에는 연령대별 근로자 숫자를 쭉 뽑아 보면 피라미드형이잖아요.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구조인데 지금은 역삼각형, 올라갈수록 많은, 그래서 갑을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연령대별 근로자 숫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사 연도별 자료를 주시고요.

장관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채용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데, 기업노조 해 가지고 청년채용 프렌들리 한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까지도 이 노조는 청년채용 프렌들리 한 노조다, 이 노조는 청년채용 언프렌들리 한 노조다, 아주 언프렌들리 한 노조다, 이런…… 마크지요. 왜냐하면 청년채용이 국가의 제일,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 보시고, 노조한테 상·벌 주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년채용 관련해서 고안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고용세습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단협상에서 불법 고용세습을 명시하고 있는 단협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실제 실태, 고용세습이 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가령 기업들로 하여금 취직한 사람들 중에 그 회사 안에 기존에 사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이것을 기업들한테 공개하게끔 하고,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민간기업은 공개 안 해도 되지요. 하지만 공개 안 한 기업의 이름은 우리 정부가 공개하는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청년채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사를 같이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방법도 고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은 공개 안 한다, 그 회사 이름을 우리가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 강요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현행 노동 관련법에는 고용 강요란 법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의역 사고 때문에 밝혀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 노동자를 고용하게끔 강요한 용역계약서가 발견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 강요 실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 스스로 이것을 공개하게끔 하는지, 우리 국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이런 법적인 압박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것은 과거에 혁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사를 최대한 바꾸어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총동원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 노동부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어쨌든 우리 각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채용에 노든 사든 함께 앞장서 주어야 한다는 총괄적인 큰 방향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프렌들리 노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위 청년채용에 앞장선 기업, 고용친화 100대 기업, 고용우수 100대 기업 이런 식으로 노사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그런 노력들이 고용우수기업에 포함되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요소를, 선정 요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협상의 고용세습이나 여러 가지 고용 강요,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취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법으로 저희들이 위법한 부분은 철저히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입법으로 보완할 문제는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고, 기업이 채용하는 부분은 거의 기업 비밀에 속해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가는 사실 정부가 들여다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숫자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환경부장관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을……

아까 장관님이 모르신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아는 것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얘기드렸다고 그런 것인데, 사실 폭스바겐이 7월부터 10월 16일까지 택

시서비스 회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신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리고 수도권 6개 지역에서 인증이 취소된 파사트 폴프 차량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으로 엔진오일 무상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무상권을 주는 것을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황당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 폭스바겐이 이 정도까지라면 우리가 같이 뭔가 장관님에 대해서 잘 좀 뒤로 밀어 드려서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딱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장관님께서 정말 이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저희 환경부 소관 법이든……

○문진국 위원 글썸,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황당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한테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따지고 보면 폭스바겐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이런 것도, 법률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한번 필히 좀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리고 노동부장관님한테 추경에 대해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참여자 수당에 대해서 161억 원이 증액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지난 2년간 상·하반기 집행률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에 남은 예산 모두 집행할 가능성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추경 편성이 꼭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청년들한테 또는 취성패에 참여하는 당사자한테 주는 수당은 시작하고 한참 뒤에 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나갑니다.

○문진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문진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남으니까, 추경에 지금 들어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이, 또 한쪽으로 보면 임금이 적어서 이런 게 되지 않느냐……

지금 교육을 1, 2, 3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가지만 3단계에서는 대부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지 않나 이래서 제가 예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했고요. 금년에는 벌써 상반기만 해도 19만 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만 해도 11만 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문진국 위원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올해 상반기 위탁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59%밖에 안 돼요. 반면에 참여자 수당 집행률은 42%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하반기에 수당이 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치가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인원이 줄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단계에서 저거 되는 그 원인이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준 것은 전체 참여대상 중에 훈련으로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성패에 할 수 있도록 재학생까지 풀다 보니까 모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학 단계이기 때문에 훈련을 막아 놔었는데 그것도 풀려고 그러합니다. 재학 단계도 필요하면 앞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문진국 위원 글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단계가 1, 2, 3단계다 보니까 2단계에서

주로 빠지니까 이런 것이 이런 형태가 나와서……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2단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쭙보겠습니다.

OIT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OIT가 SK케미칼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던 CMIT 계열의 유독물질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유독물질로 지정한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서 유독물질 지정됐을 2014년 그때부터 2016년 5월까지 3M 공기청정기 향균필터 공급 현황을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8개 공기청정기 생산·판매사에 모두 118만 3532개의 향균필터를 제공했고 이 중에서 7개 사에 공급한 118만 2032개의 향균필터가 OIT 함유 향균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이 공급한 공기청정기 향균필터 대부분에 OIT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에 현대모비스 등 6개 사에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는 215만개 이상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M의 주력 물질인 OIT를 함유한 향균필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 제조사들이 OIT 필터를 교체해 주고는 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쪽 업체들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OIT가 들어 있어도?

○**김삼화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관님이 보시기에 OIT가 인체에 유해한가요, 무해한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삼화 위원** 유독물질이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현안보고에서 유해성과 위해성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해성은 급성경피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급성경피독성이 유독물은 아니라도 그러나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강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위해성입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에도 중금속 기준이 있거든요.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유독물질이잖아요.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표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발표가 있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기간 하면서……

○**김삼화 위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장기간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하면 노출량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화학물질 관련해서 제품 안전관리가 지금 이원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부는, 공기청정기는 가습기살균제하고 비슷하게 환경부 관리 대상 제품이 아니었고 전자제품으로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으로, 이원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인 OIT를 이용해서 향균필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한 곳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OIT에 대해서 흡입독성실험 평가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셨지요? 약식으로 1개월만 했지 흡입독성 평가는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아니고 현안보고서 1쪽에 보시면 반복흡입독성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했는데 90일간 한 경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강에 영향이 관찰이 된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있고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흡입독성 결과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한 것은 아까 약식으로 한 달만 했다고 하셨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항

균필터에 대해서는 회수 권고를 할 게 아니라 OIT 사용을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스스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전부 거둬들이기 때문에……

○**김삼화 위원**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것을 또……

○**김삼화 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그냥……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기들이 쓰겠다고, 또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러면 유해성·위해성 심사를 받으라고 해야지요.

○**김삼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금지명령을 하고 정확하게 흡입독성실험 평가결과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 성분표시와 관련해서 계속 안전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해하다,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기살균제도 그렇고 OIT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쭙어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생활화학제품은 지금 열다섯 가지는 저희가 화평법에 의해서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살생물제입니다. 살생물제가 수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산업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공개한다고 해 봐야 완전히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어느 곳에 뭐가 쓰이는지 모르는 게 산업부도 많고 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그렇고 임이자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김삼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국회하고 상의하고 또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국민들이 더 이상 화학제품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수도권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설정해 운행할 예정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송옥주 위원** 그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운행하는 트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신차를 살만한 여력이 없어서 무료로 달 수 있는 DPF를 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다는 경우에도 그거 다는 데 비용은 본인부담이 10%입니다.

○**송옥주 위원** 신차 사는 것보다는 DPF를 달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DPF의 성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근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배출평가와 관리방안 보고서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보고는 받았습시다만 직접 읽어 보지는 못 했고요, 보고는 받았습시다.

○**송옥주 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DPF 부착 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국내 판매 중인 20종 경유차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입니다.

신규 제작 경유차도 안전하지 않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실시한 내용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송옥주 위원** 그중 19개의 차종이 실내의 인증기준 대비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18개 차종이 기준치에 비해 평균 6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규 경유차도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

는 데, 세금감면 대상 차량에 신규 경유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규 경유차에 대한 제제나 관리를 해도 부족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노후 경유차 폐차 등 DPF 이외에 다른 추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신규 제작 경유차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옥주 위원** 죄송한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가급적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할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유차는 2005년도 이전에 나온 차보다 7분의 1, 8분의 1밖에 오염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2005년도 것을 1대 폐차를 시키면 신차는 8대 굴러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

○**송옥주 위원**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송옥주 위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Survey Monkey라는 설문조사 사이트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 예.

본 위원이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Survey Monkey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Survey Monkey는 문자를 보내면 답변자가 링크로 연결해 들어가 설문에 답변을 하는 단순한 휴대폰 설문 틀인데요, 무료 서비스부터 3만 9000원까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숙제할 때 이용한답니다.

정부가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 대응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지도 않고 이 같은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질문 내용도 부실하고요, 표본집단 수집도 잘못되는 등 제대로 된 자료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 설문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회사 소재지 응답 결과인데요. 응답자들의 회사 소재지를 보면 거제가 75.7% 그리고 두 번째가 울산인데 울산의 응답자가 10.6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창원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재지에 대한 응답 모집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소속 응답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소속을 보면 협력업체 및 하청이 85.7%에 해당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이 필요한 물량팀이 있습니다. 이 물량팀은 12.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사각지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물량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업 피보험자 지역별 분포 및 변동 현황입니다.

조선업 고용보험자의 감소 추세도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감소 인원수만으로 보면 울산·거제·창원의 순으로 감소되는데 감소율로 보면 창원이 18%로 가장 심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하는 데 창원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정부사업과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허술한 질문 방식과 과학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그런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질문자들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그런 설문을 실시해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송옥주 위원 마지막 말 하고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송옥주 위원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화된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책임지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별고용업종을 지정할 때는 신청서, 협회 그다음에 저희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 추이 또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우선 본인들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재취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하고 싶은지, 조선 업종이 당장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취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면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 희망하는지 저희들이 다른 취업지원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것이 이것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옥주 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재취업이든 고용지원이든 그런 것에 대한 취향을 묻는 부분 중에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추경안에 해외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옥주 위원 문제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송옥주 위원 그리고 본인이 언제 구조조정이

되고 해고를 당할 건가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사측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자기가 언제쯤 해고가 될 거라는 걸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저희들이 기업별 자구계획을 토대로 해서 일정을 보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음 단계 희망은 뭔지를 그리고 국가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옥주 위원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세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상돈 위원, 한정에 위원님 세 분이 3분씩 하시지요.

그러면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신보라 위원 갑을오토택 사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쟁의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감소를 감당해야 되고 노조는 임금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서로 부담의 균형이 맞는 범위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있지만 사실상 요즘의 노사갈등을 보게 되면 그 균형을 많이 무너뜨린 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파업의 관행을 계속 용인해 왔다는지 또 그리고 단체협약상에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내버려 뒀다는지 그리고 법적인 장치들이 좀 미비한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관행들 때문에 그런 균형들이 계속 무너져 왔고 그것들이 노사가 서로를 물고 할퀴는 그런 갈등싸움으로 치닫게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들이 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바라는 근로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자면 서로가 위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의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계속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느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180여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을오토텍도 하청업체지만 실은 거의 원청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180여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하는 것 보편요. 하지만 이런 도미노의 도산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고 또 1만 9000여 명의 협력사 가족들의 경제적 파탄도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나 지역경제 위축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갑을오토텍이 지금 현 상태에 온 것은 노사 간의 상호 불신이라고 봅니다. 노사가 서로, 기업은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또 노동조합도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호 불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지도를 해서 불신을 좀 해소하고 조기에 해결책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1만 3000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생계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류가 종식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불법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조에서 회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 놓고 노사 불문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함으로써 다시는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환경부장관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은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도 대체로 그것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수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수기에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 그런데……

○**이상돈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좌우간에 일반세균은 먹는 물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장균균이라든지……

○**이상돈 위원** 대장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세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정수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돈 위원** 앞의 걸 보세요, 앞의 거. 처음 페이지요.

저거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는 저거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세균이 투과되어서 정수기 가운데 절반은 부적합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게 오보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는 틀린 것 아닙니까?

다음 번 넘겨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지난 6월 30일 환경부 고시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을 뺐어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다음 번 넘겨 보세요.

그런데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 별표에 나와 있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서는 제1 미생물 가에 일반세균은 1ml당 100CFU를 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한 정수기라는 것이 법의 정의상 먹는 물을 수질 기준에 맞도록 제조하는 기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먹는 물에서는 일반세균이 100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정수기를 거친 물은 관계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구태여 이것을 삭제한 진정한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 보급률이 98% 됩니다. 그렇고 정수기를 쓸 때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은 수돗물입니다. 그러면 수

돗물의 상태에서 이미 일반세균은 규제를 받고 왔습니다. 수돗물이. 수돗물에서 제조할 때 일반세균이나 총 대장균군이나 여기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와 관련해서는 그 필터의 성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수도꼭지까지 온 것에는 일반세균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정수기 가는 사이에 일반세균이 생깁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수기에는 일반세균을 빼도 문제가 없겠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논리에 의하면 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돈 위원 저기 있잖아요. 제일 앞에 정수기 100, 일반세균이 수돗물의 100배가 넘는 게 나와서 정수기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썽,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정수기에서 물 뽑아 쓸 때마다 불안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필터를 잘 바꿔 주지 않고 오랫동안 쓰면 거기서 스스로 또 세균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좌우간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저도 하여튼 들으면서 장관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2010년에 갑을합섬이 갑을오토텍을 인수하면서 그 당시 단체협약 승계 관련한 사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수자 갑을합섬은 클로징 이전에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세부지침 및 회의록 기재사항 및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종 노사 간 합의를 승계하여 동일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경비업체 용역 채용과 관련한 부분, 2008년 6월 25일 날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 합의를 하고 이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가지고 갑을오토텍지회가 천안지청에다가 이 합의서의 효력을 물었을 때 지청에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을 본부에다 물었을 때 본부에서는 2008년 6월 25일 날 체결한 이 합의서는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법원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2016년, 올해 4월 26일자 서면으로 해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이 4월 29일 노조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정기 단체협약에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되고 갱신 제안이 없을 때는 그냥 그 협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본부가 그냥 이것은 2008년에 끝난다고 사업주에게 답을 해 주면서 사실은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질의를 하면 오늘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고’라는 말씀 하시는데 ‘경영권 혹은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게 언제 판결입니까? 어디의 판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경영권은 존중하고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거나 파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애 위원 이것이 1992년에 있었던 대법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 글썽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면 지키라는 의미예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고유한 경영권이고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인사권에 해당되는 또는 경영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 협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애 위원 아, 유효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

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럼요.

○한정애 위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시는데 왜 사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석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사건건 이것이 위법하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한정애 위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인정,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권과 인사권의 주장은……

○한정애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노동부가 자꾸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는 거잖아요.

○한정애 위원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지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것이 위법하다, 문제가 된다…… 권고는 좋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 조항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하고 그것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노동부가 문서 만들 때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 위대한 여정도 아니고 새로운 도약이 생길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있어요. 중간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한정애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갑을오토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칭의 태도와 본부의 태도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에 달라진 태도로 인해서 사실은 갈등이 더 커진 것에 대해서 노동부 본부는 자성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또 저도 위원회에 있어 봤는데 해석 권한은 노동위원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내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 경위와 그 차이를 왜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한번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으로 모든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서형수 위원, 이용득 위원, 김삼화 위원, 한정애 위원, 장석춘 위원, 이정미 위원,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소위가 종료되어야 개의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개의 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	---	---	-------

차 관 이 정 섭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윤 섭
 환 경 정 책 실 장 이 민 호
 물 환 경 정 책 국 장 김 영 훈
 자 연 보 전 국 장 박 천 규
 자 원 순 환 국 장 신 진 수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나 정 균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오 종 극
 환 경 정 책 관 박 광 석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중
 국 제 협 력 관 주 대 영
 대 변 인 유 제 철
 감 사 관 이 경 용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박 진 원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차 관 고 영 선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종 길
 노 동 시 장 정 책 관 김 경 선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장 신 철
 청 년 여 성 고 용 정 책 관 나 영 돈
 직 업 능 력 정 책 국 장 권 기 섭
 노 사 협 력 정 책 관 임 서 정
 정 책 기 획 관 김 용 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5. 경대수 · 홍문표 · 박덕흠 · 이종배 · 권성동 · 이종명 · 권석창 · 여상규 · 황영철 · 김현아 의원 발의)

7월 18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2016. 7. 20. 이원욱 · 김종대 · 민병두 · 안호영 · 소병훈 · 김병관 · 임종성 · 박용진 · 김경진 · 윤종오 · 표창원 · 김종훈 · 안규백 · 강창일 · 김상희 · 박홍근 · 백재현 · 이학영 · 윤영일 · 박광온 · 김현권 · 우원식 · 윤호중 · 권미혁 · 윤후덕 · 손혜원 · 강병원 · 진재수 · 어기구 · 김해영 · 최운열 · 김태년 · 유승희 · 전현희 · 박정 · 이훈 · 황희 · 송옥주 · 김경수 · 김광수 · 박주민 · 이정미 · 김동철 · 강훈식 · 백혜련 · 박영선 · 김영주 · 유은혜 · 문미옥 · 홍일표 · 박재호 · 조승래 · 노웅래 · 원혜영 · 안민석 · 김철민 · 남인순 의원 발의)

7월 21일 회부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이용득 · 김현권 · 민병두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손혜원 · 안규백 · 윤호중 · 원혜영 · 이동섭 · 이석현 · 이종걸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황주홍 · 정동영 · 심재권 · 박준영 · 최경환(국) · 김중회 · 민홍철 · 이개호 · 김관영 · 이찬열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1. 이용득 · 김현권 · 민병두 · 박주민 · 소병훈 · 손혜원 · 서형수 · 안규백 · 원혜영 · 윤호중 · 이동섭 · 이석현 · 이종걸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1. 이용득 · 김현권 · 민병두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안규백 · 원혜영 · 윤호중 · 이동섭 · 이석현 · 이종걸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6. 7. 21. 정부 제출)

이상 5건 7월 22일 회부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2. 노웅래 · 심상정 · 조배숙 · 정성호 · 박홍근 · 신창현 · 최경환(국) · 김삼화 · 김현미 · 박경미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2. 송옥주 · 강병원 · 김삼화 · 김중로 · 김현권 · 박남춘 · 박주민 · 박홍근 · 서형수 · 손금주 · 신창현 · 유승희 · 유은혜 · 윤후덕 · 이용득 · 임종성 · 전해철 · 전해숙 · 조정식 · 한정애 · 홍영표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이용득 · 윤관석 ·

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7월 28일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김삼화·이동섭·최경환(국)·김종희·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유동수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전재수·유은혜·서형수·정재호·최인호·박재호·위성곤·강병원·이종걸·윤후덕·오영훈·김해영·신동근·안호영·신경민·원혜영·박남춘·김정우·유동수·김철민 의원 발의)

8월 3일 회부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8. 4. 서영교·윤관석·이원욱·우원식·위성곤·박홍근·권칠승·이춘석·백혜련·유은혜·이재정·조승래·신경민·김병관·윤후덕·기동민·김성수·안규백·이인영·김영주·김병욱·김경협·김해영·노웅래·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박경미·문미옥·소병훈·김관영·진선미·박광온·박남춘 의원 발의)

8월 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7. 13. 한정애·인재근·서형수·최명길·이정미·송옥주·신창현·어기구·강병원·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7. 13. 박정·황주홍·이원욱·서형수·위성곤·홍의락·어기구·박광온·송옥주·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해영·소병훈·엄용수·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4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7. 15. 박광온·김두관·김해영·김영주·권칠승·이훈·오제세·문미옥·전혜숙·백혜련·김영진·이원욱·김부겸·민병두·김태년·김진표·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

7월 18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남인순·박광온·김해영·안규백·윤관석·윤후덕·유은혜·위성곤·표창원·김영춘·어기구·박홍근·김정우·박남춘·진선미·이정미·신창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남인순·박광온·김해영·안규백·윤관석·윤후덕·유은혜·위성곤·표창원·어기구·박홍근·김정우·박남춘·진선미·이정미·신창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유동수·김종훈·백혜련·강창일·김상희·윤후덕·안호영·김철민·소병훈·전재수·조배숙·박정·윤영일·윤종오·민병두·박광온·김태년·문희상·김종대·강훈식·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9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9. 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심상정·임종성·이정미 의원 발의)

7월 20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0. 이용득·안규백·김현권·소병훈·설훈·김경협·서형수·한정애·이동섭·이정미·민병두·손혜원·이인영·송옥주·박재호·김부겸 의원 발의)

7월 21일 회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박주현·정인화·최경환(국)·장정숙·신용현·최도자·김종희·김경진·황주홍·

이태규·김광수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박주현·정인화·최경환(국)·장정숙·
신용현·최도자·김종희·김경진·황주홍·
이태규·김광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2. 강병원·김상희·김영주·윤종오·
강훈식·김경진·어기구·조승래·박남춘·
서형수·우원식·기동민·노웅래·윤후덕·
김영호·백혜련·이원욱·이춘석·원혜영·
신창현·이찬열·박영선·민병두·송기현·
박주민·이재정·노회찬·제윤경·박홍근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2. 강병원·김영주·윤종오·강훈식·
김경진·어기구·고용진·조승래·박남춘·
서형수·김상희·우원식·기동민·노웅래·
윤후덕·김영호·백혜련·이원욱·이춘석·
박찬대·원혜영·위성곤·신창현·이찬열·
박영선·김종희·민병두·송기현·박주민·
이정미·이재정·제윤경·박홍근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
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
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25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
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
김현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5. 김해영·윤후덕·이원욱·이찬열·
전재수·윤호중·박광온·권칠승·위성곤·
오제세·신창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김기선·김성태·심상정·김종태·

김석기·김도읍·김종훈·홍의락·박성중·
정성호·이종배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5. 윤종오·김종훈·이용득·심상정·
노회찬·김종대·추혜선·이재정·윤소하·
우원식·제윤경·김해영·서형수·김경진·
유은혜·최경환(국)·이석현·이정미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5. 이용득·추미애·김현권·우원식·
위성곤·이인영·홍영표·금대섭·김종훈·
한정애·송옥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
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
최경환(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5. 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
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
최경환(국)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5. 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
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
최경환(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2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6. 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
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
최경환(국)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조경태·송희경·신보라·김성원·
김성태·김승희·김광림·이헌승·정성호·
지상욱·조원진·김삼화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소병훈·김철민·전재수·유성엽·
김정우·전해철·문미옥·황주홍·김종희·
전혜숙·최경환(국)·윤후덕·정동영·신창현·

박지원 · 손혜원 · 박경미 · 안규백 · 박광은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조정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 · 이정미 · 김경협 · 서형수 · 진선미 · 송옥주 · 박남춘 · 이용득 · 신창현 · 김삼화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조정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조정식 · 윤관석 · 박찬대 · 박남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조정식 · 윤관석 · 박찬대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9건 7월 28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8. 김삼화 · 김관영 · 김경진 · 김경협 · 김동철 · 김중로 · 박주현 · 서형수 · 이동섭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김삼화 · 김경진 · 박주선 · 이동섭 · 최경환(국) · 김중희 · 주승용 · 황주홍 · 김동철 · 김관영 · 이용주 · 유성엽 · 박지원 · 신용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8. 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윤관석 · 박찬대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9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9. 김삼화 · 김경진 · 박주선 · 이동섭 · 최경환(국) · 김중희 · 주승용 · 황주홍 · 김동철 · 김관영 · 이용주 · 유성엽 · 박지원 · 신용현 의원 발의)

8월 1일 회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6. 8. 1. 오제세 · 신창현 · 윤후덕 · 박남춘 · 진선미 · 전해숙 · 김관영 · 이찬열 · 박홍근 · 심재권 · 김철민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6. 8. 1. 김상훈 · 김현아 · 송석준 · 김순례 · 김승희 · 광대훈 · 김광림 · 정종섭 · 윤재옥 · 이종배 · 김기선 · 박명재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훈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 김중훈 · 윤종오 · 이용득 · 심상정 · 김종대 · 진선미 · 정갑윤 · 엄용수 · 우원식 · 권미혁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홍의락 · 유은혜 · 채이배 · 김혜영 · 박주선 · 임종성 · 유승희 · 윤후덕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훈 의원 대표발의)

(2016. 8. 1. 김중훈 · 윤종오 · 이용득 · 심상정 · 김종대 · 진선미 · 정갑윤 · 엄용수 · 우원식 · 권미혁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홍의락 · 유은혜 · 채이배 · 김혜영 · 박주선 · 임종성 · 유승희 · 윤후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 인재근·김현권·남인순·박남춘·박홍근·신경민·심재권·위성곤·유승희·윤후덕·최도자·한정애·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5건 8월 2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6. 8. 2. 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욱·김태흠·김명연·성일중·이학재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욱·김태흠·홍철호·김명연·성일중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오세정·김경진·최경환(국)·박경미·송희경·조배숙·김광수·김성수·박주선·신용현·金成泰·김종희·김관영·채이배·윤종오·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오세정·김경진·최경환(국)·박경미·송희경·조배숙·김광수·김성수·박주선·신용현·金成泰·김종희·김관영·채이배·윤종오·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3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8. 3. 김삼화·김종희·김동철·정인화·최도자·이동섭·송옥주·이용득·홍영표·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8. 3. 김삼화·김종희·정인화·최도자·이동섭·송옥주·이용득·홍영표·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6. 8. 3. 소병훈·김철민·정성호·김종희·윤후덕·조배숙·김해영·신창현·박용진·인재근·김정우·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8. 3. 정부 제출)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8. 4. 한정애·어기구·송기현·제윤경·권미혁·서형수·이용득·박경미·박재호·손혜원·송옥주 의원 발의)

8월 5일 회부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2016. 8. 8. 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6. 8. 8. 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안민석·김종희·윤후덕·김해영·유은혜·전재수·강병원·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안민석·김종희·윤후덕·김해영·유은혜·전재수·강병원·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016. 8. 8. 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성태·김관영·강효상·윤종필·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성태·김관영·강효상·윤종필·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5건 8월 9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윤종오·김경진·안민석·김종훈·서영교·조정식·강병원·유은혜·노희찬·이용득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진선미 · 박광온 · 신창현 · 유동수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안규백 · 진선미 · 박광온 · 신창현 · 유동수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안규백 · 진선미 · 박광온 · 김삼화 · 신창현 · 유동수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안규백 · 진선미 · 박광온 · 신창현 · 유동수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김현미 · 홍영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안규백 · 진선미 · 박광온 · 신창현 · 유동수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김현미 · 홍영표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송옥주 · 이용득 · 안규백 · 진선미 · 박광온 · 신창현 ·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 김현미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8월 10일 회부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7. 26. 정부 제출)

7월 2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6. 7. 12. 김성태 · 장제원 · 김학용 · 정태옥 · 민홍철 · 신상진 · 박덕흠 · 정성호 · 주호영 · 이완영 · 김정훈 의원 발의)

7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 7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7. 15. 경대수 · 홍문표 · 박덕흠 · 이종배 · 권성동 · 이종명 · 권석창 · 여상규 · 황영철 · 김현아 의원 발의)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박남춘 · 김철민 · 윤후덕 · 이재정 · 이찬열 · 인재근 · 박재호 · 김정우 · 박찬대 · 김태년 · 송영길 · 소병훈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채이배 · 최경환(국) · 유은혜 · 민병두 · 기동민 · 이철희 · 권미혁 · 황희 · 신용현 · 김중로 · 이동섭 · 이용호 · 오세정 · 김경진 · 어기구 · 박남춘 · 정인화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정성호 · 윤호중 · 문희상 · 김성원 · 윤후덕 · 박정 · 김한정 · 신창현 · 이현재 · 김영우 의원 발의)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7. 19. 전해철·윤후덕·안호영·송옥주·소병훈·황희·유승희·강병원·신창현·이정미·전혜숙·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윤영일·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

7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소병훈·윤관석·송석준·인재근·이우현·윤후덕·김철민·박정·김영진·김병욱·이현재 의원 발의)

7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6. 7. 26. 유의동·송희경·원유철·이완영·김학용·김종석·성일중·정태욱·조훈현·김성원·김한표 의원 발의)

7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최도자·진선미·이용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김삼화·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경진·김종희·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김동철·김경진·박주민·김중훈·

손금주·홍의락·정동영·주승용·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6. 8. 1. 정우택·윤후덕·윤종필·김성찬·이완영·김관영·정용기·이우현·이학재·함진규·김순례 의원 발의)

8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8. 4.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이학영·김종대·김현권·도종환·김정우 의원 발의)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